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0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임미애 · 진성준 · 서미화
최민희 · 홍기원 · 권향엽
김 윤 · 김 현 · 이수진
맹성규 · 송재봉 · 이연희
문금주 · 전종덕 · 민홍철
윤준병 · 최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등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및 제53조제1항제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 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1항제5호 중 “常勤 任員과”를 “상근 임원, 비상임 조합장과”로, “組合의 中央會長”을 “조합의 중앙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 이 없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 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 해유도죄) · 제59조(기부행위 의 금지 · 제한 등 위반죄) ·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 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 된 자를 포함한다)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 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